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074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7.

발 의 자 : 김용태・서천호・조은희
김재섭・박충권・이종배
유용원・강선영・윤한홍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,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・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련활동・수학여행・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청에서 ‘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,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보조인력”을 “보조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장등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안전조치의무를 다한”을 “사전 안전교육,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장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·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5항에 따른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⑦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등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,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·절차 및 제7항에 따른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5(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 밖 교육활동 운영 관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

2. 보조인력 명부 작성·관리,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·연수

3. 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

4.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,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지원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

③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 ① ~ ④ (생 략)	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학교장, 교직원 및 제10조의 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⑤ ----------보조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장등”이라 한다)----------사전 안전교육,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----------.
<신 설>	⑥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장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·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5항에 따른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<신 설>	⑦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등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, 소송 지원 등

	을 제공할 수 있다.
<신 설>	⑧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·절차 및 제7항에 따른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10조의5(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	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	1. 학교 밖 교육활동 운영 관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
	2. 보조인력 명부 작성·관리,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·연수
	3. 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
	4.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,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지원
	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

	③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